

定 款

(시행일 : 2026년 8월 20일)

興 亞 海 運 株 式 會 社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흥아해운주식회사라 말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운업
2. 해송취급업
3. 조선업
4. 항공운송대리점업
5. 무역업
6. 판매업 및 대리업
7. 창고업 및 보관업
8. 부동산임대업
9. 복합운송주선업
10. 특수자동차운송사업
11. 선박관리업
12. 국제해운대리점업
13. 해상여객운송업
14. 종합물류업
15. 부동산개발업, 해외부동산개발사업
16. 복합레저업, 체육시설업, 관광숙박업
17. 원유, 천연가스 및 기타석유제품의 개발, 수입, 저장, 판매사업
18. 대체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제조, 판매사업
19. 국내외 광물자원의 탐사, 채취, 판매, 개발사업
20.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방지 및 환경의 보존, 복원, 재생에 관한 사업

21. 창업지원 및 신기술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

22. 위 각호와 관련되는 일체 부대사업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eung-a.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자본 및 주식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억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만주로 한다.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7조의2(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500만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2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현금으로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3(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주주총회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500만주로 한다.

1. 이사의 선임·해임

2. 감사의 선임·해임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2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현금으로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4(3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500만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2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현금으로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의5(4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4종 종류주식은 의결권 있는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500만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2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신주발행) 신주발행의 수와 그 절차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주식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국내외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삭제>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 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10조(시가발행) <삭제>

제10조의2(신주의 배당 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 채

제14조(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이나 장비의 도입, 신규사업 진출,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개인이나 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 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이나 장비의 도입, 신규사업 진출,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개인이나 법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규정은 사채발행인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로부터 2주간전에 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목적사항을 서울 시내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단,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총회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하되 그 중 1명은 상근으로 한다.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의 경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⑤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 ⑥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독립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각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2조의2(운영임원)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운영임원을 둘 수 있다.
- ② 운영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 ③ 운영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4조의2(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되 제2항 제1문에 따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소집권자 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신설>

제37조(이사회 결의 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내부투명경영위원회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6조, 제37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39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며,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단,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40조(기밀비지급) 삭제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6 장 계 산

제42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는 임시결산을 할 수 있다.

제43조(재무자료의 작성,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이익금 처분) 매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4조의2(주식의 소각)<삭제>

제45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7 장 부 칙

제47조(내규)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를 결정할 수 있다.

제48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 및 상법 기타의 법령에 의한다.

제49조(발기인) 이 회사 설립발기인의 주소, 성명은 이 정관의 별첨 기재와 같다.
상기 동아해운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별첨에 주소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한다.

제50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에 관한 경과규정) 이 정관 제5조의 규정은 개정 상법부칙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 회사가 주금액의
인상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병합을 위한 별도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제51조(경과규정)

- ① 이 정관 시행당시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에
관하여는 이 정관 개정에 불구하고 상법부칙 제14조, 제15조 및 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한다.
- ② 이 정관은 199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2, 제12조, 제23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5조, 제41조, 제46조 위 개정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전환사채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1.10)

- ① 이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5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30)

- ① 이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위 규정은 2004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3.18)

- ① 이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30조 제5항, 제32조의2 위 규정은 2005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17)

- ① 이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3.16)

- ① 이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3.21)

- ① 이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7조, 제7조의2, 제9조 제2항 1호/4호/5호/6호/7호,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3항 위 개정규정은 2008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20)

- ① 이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2조, 제9조 제2항 2호/3호/6호,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4항, 제44조의2 위 개정규정은 2009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3.19)

- ① 이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13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위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단, 제4조, 제19조, 제43조조의 2 위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3.23)

- ① 이 정관은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단, 제7조, 제7조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제9조, 제14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7조, 제43조, 제45조 위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3.24)

- ① 이 정관은 제5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08)

- ① 이 정관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정관이 개정되기 전에 발행된 회사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사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채의 액면총액은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한다.

부 칙 (2021.05.24)

- ① 이 정관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5조, 제9조 제2항 위 개정규정은 2021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29)

- ① 이 정관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37조의2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3.28)

- ① 이 정관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30조 제3항, 제45조 제3항 위 개정규정은 2023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5)

- ① 이 정관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30조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3.26)

- ① 이 정관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29조, 제31조, 제34조의2, 제37조의2의 제1항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8.20)

- ① 제3조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